

<붙임4>

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권익보호 신청 안내

- 금융감독원은 「금융감독·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」(17.12.12. 발표)에 따라 「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」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- 「권익보호관」은 금감원에 상근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익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
 -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장을 대변·진술하게 되며
 - 금융감독원으로부터 「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통지(고지)서」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 등은 붙임 「권익보호 신청서」 서식*에 의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권익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
- *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내 업무자료/공통자료에 게시
- 신청이 접수되면 「권익보호관」이 연락을 드리며,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「권익보호관」(02-3145-7888) 또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(02-3145-782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「권익보호 신청서」를 보내실 곳

주소 : (우 0732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

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(제재심의국)

이메일 : protect@fss.or.kr

<참고>

권익보호 신청서

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귀중

201 . . .

본인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(고지)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익보호를 신청합니다.

1. 신청인(성명·회사명, 소속, 직위) : (서명·날인, 직인)
2. 대표자·법률대리인 성명, 소속, 직위 : (해당사항 있는 경우 기재)
3. 연락처 :
4. 사전통지일 :
5. 조치예정내용 :
6.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:
7. 해당 검사부서 및 담당검사역 :
8. 신청(소명)사유 : (별도 문서 첨부 가능)

(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검사부서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할 수 있음)

※ 4~7은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(고지)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음